

2020. 4. 20. 10:00

제2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 당초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2019. 12. 24.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 홍보관 일원 외의 지역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당초 사업부지 매입계획의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 취득 취소 재산표시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대장가격	소 유 자
토 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218,853.2㎡	59,364백만원	LH, 교회 등

○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 면 적 : 220,882㎡(시·군유지 포함)
- 사 업 비 : 800억원(토지매입비)
- 주요내용 : 사업 대상토지 218,853.2㎡(66,203평) 매입계획 취소
- 취소사유 : 2019. 12. 24.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외의 지역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을 취소함.

○ 추진상황

- 2019. 9. 30.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 2019. 12. 19.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19. 12. 24. :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 공고(市)

○ 향후계획

- 2020. 4. : 제278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의회
상정·승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취소)			계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건수 (필지, 동)	수량	금액
취득	계	12 (143)	300,664.02	1 (97)	218,853.2	59,363,290	11 (46)	81,811	74,618,168
	토지	4 (130)	254,181.2	1 (97)	218,853.2	59,363,290	3 (33)	35,328	3,661,104
	건물	2 (3)	582.68				2 (3)	582.68	237,788
	토지	1 (3)	22,332				1 (3)	22,332	8,907,463
	건물	1 (3)	4,294.39				1 (3)	4,294.39	1,937,813
	토지								
3.기타	건물	4 (4)	19,273.75				4 (4)	19,273.75	59,874,000
	계	1 (58)	93,876				1 (58)	93,876	2,693,450
	토지								
4.매각	건물								
	계								
5.양여	계								
	토지								
6.교환	계								
	토지	1 (58)	93,876				1 (58)	93,876	2,693,450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답	답	현풍읍	원교리	718-2	1,319	330,000,000	2020. 8	달성군 재활용품 선별장 확장이전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289	곽병근	2019.12 의회의결
2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1,098	461,160,000			경상북도 칠곡군 예관읍 석전리 771-4 무성그린맨션 101-1007	김형인	
3 (건물)	답	장	현풍읍	원교리	720	258.8	15,948,000			"	"	
4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747	1,153,740,000			"	"	
5 (건물)	잡	장	현풍읍	원교리	721	240	3,840,000			"	"	
6	도	도	현풍읍	원교리	1749-33	450	189,000,000			건설부	국유지	
7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0-2 860-2	2031.75	8,660,000,000 (사업비)	2021. 8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	주거장	주거장	화원읍 설화리	563	38,882.3	38,882.3	50,663,636,9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401-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2019.12 의회의결	
9	주거장	주거장	화원읍 명곡리	324	33.5	33.5	36,347,500			"	"		
10	주거장	주거장	화원읍 명곡리	324-1	45.9	45.9	49,801,500			"	"		
11	구거	구거	화원읍 설화리	569	692.2	692.2	71,642,700			"	"		
12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	18,105	18,105	128,726,550			화원 교회			
13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31-1	7,980	7,980	48,438,600			"	"		
14	임	임	화원읍 명곡리	909-1	19,834	19,834	123,764,160			"	"		
15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8-9	83	83	8,067,600			국유지			
16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8	23	23	2,235,600			"	"		
17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9	99	99	9,622,800			"	"		
18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1-3	202	202	19,634,400			"	"		
19	잡	잡	화원읍 명곡리	322-1	34.2	34.2	27,264,240			대상에너 지주식회 사	대구시 중구 명덕로 85(남산동)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 (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20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31-4	21,397	152,132,67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22길 10, 101동 107호(지산동,보상매선)	최혁 외 2	2019.12. 의회의결
21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7	3,306	22,679,16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97-2 신신별과 비동 301호	김영숙 외 4	
22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6	417	2,710,50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693	석권도	
23	임	임	회원읍	명곡리	909-5	8,007	48,602,490			대구시 서구 내당동318 삼익뉴타운 103동 811호	강다원	
24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8	1,197	95,76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243, 501동1601호(미래빌5단지)	구봉일	
25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7	995	55,222,500			"	"	
26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1	483	26,806,500			대구시 서구 원대동3가 1446-1	김병명	
27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9-8	2,086	115,773,000			"	"	
28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8	879	48,784,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866	김용득	
29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6-1	1,395	77,422,500			"	"	
3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5	330	45,738,000			"	"	
31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06-2	1,069	148,163,400			"	"	
32	묘	묘	회원읍	명곡리	904	884	33,768,8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3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07-1	1,537	85,303,5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02-2	김정용	2019.12. 의회의결
34	답	답	화원읍	명곡리	907-2	1,154	64,047,000			"	"	
35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8-6	502	48,794,4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2 창구정만선 101동1102호	김진식	
36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5	324	31,492,800			"	"	
37	답	답	화원읍	설화리	578-12	281	27,313,200			"	"	
38	답	전	화원읍	설화리	571-11	433	44,599,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0-2	박성곤	
39	답	전	화원읍	설화리	571-17	23	2,369,000			"	"	
4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911-1	423	23,476,5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41	전	전	화원읍	명곡리	912	1,388	77,034,000			"	"	
42	대	대	화원읍	명곡리	911-2	433	115,178,000			"	"	
43	답	전	화원읍	명곡리	916	952	52,836,000			"	"	
44	목장 용지	목장 용지	화원읍	명곡리	911-3	810	104,733,000			"	"	
45	답	전	화원읍	명곡리	913	1,334	118,45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6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5	1,297	115,173,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경북 영주시 중앙로 95번길13(영주동)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3 " 대구시 남구 대명복개로3길71 (대명동)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10동1303호(대곡역2면별) "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45, 411동1802호(도원동,대곡강남읍)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16길 43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16길 43	박정수	2019.12. 의회의결	
47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0	374	54,978,000			윤성훈		
4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	1,104	162,288,000			"		
49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2	1,425	162,022,500			임재암		
50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9-5	1,150	111,780,000			"		
51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5	840	46,620,000			최명섭		
52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3	664	53,120,000			"		
53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1	1,323	73,426,500			최영옥		
54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26-3	631	35,020,500			"		
55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1	436	42,379,200			황정숙		
56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9-3	1,021	116,087,700			"		
5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0	575	46,000,000			김인진		
58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2	1,296	103,680,000			김인진 외 4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9	답	화원읍 설화리	578-4	632	632	632	61,430,400	2020. 6.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71	정유순 외 2	2019.12. 의회의결
60	전	화원읍 명곡리	909-2	3,306	3,306	3,306	47,606,4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28-3	박만호 외 1	
61	답	화원읍 설화리	578-1	731	731	731	71,053,2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14	박춘향	
62	답	화원읍 설화리	572-1	1,564	1,564	1,564	152,020,8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39,미태빌410동1402호	김진태	
63	답	화원읍 설화리	578-7	2,522	2,522	2,522	261,027,000			대구시 남구 대명로20길 82(대명동)	김석곤	
64	답	화원읍 설화리	578-2	1,051	1,051	1,051	102,157,2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개골길14	임상호	
65	전	화원읍 설화리	579-4	1,293	1,293	1,293	147,014,1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08	박재덕	
66	답	화원읍 설화리	578-8	949	949	949	92,242,80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162	김준영	
67	답	화원읍 설화리	578-3	1,600	1,600	1,600	155,520,00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10-19	김충겸	
68	답	화원읍 설화리	578-10	1,322	1,322	1,322	128,498,4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66	석정호	
69	답	화원읍 설화리	573	774	774	774	75,232,8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3	김정수	
70	답	화원읍 설화리	574	783	783	783	76,107,600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0 코오롱아파트 4동 203호	임진택	
71	답	화원읍 설화리	576	1,501	1,501	1,501	145,897,2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04길13-17, 10501호명곡마을1단지	정쌍복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2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0	258	25,077,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500길 12-8	김미승	2019.12. 의회의결
73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8-11	899	87,382,800			대구시 달서구 장기로 189, 108동1003호(본리동,상당매안)	주춘숙	
74	전	전	회원읍	설화리	571-12	909	88,354,8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3길 85-18(진천동)	박영명	
75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7	820	79,704,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45-3	임영수	
76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1-13	208	20,217,6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683	임환수	
77	답	답	회원읍	설화리	570-1	46	4,471,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216	박동방 우	
78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02	727	40,348,500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 7, 509동109호(평안대)	김창현	
79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21	1,537	85,303,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2493	신유창	
80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26-2	1,706	94,683,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304	진공희	
81	전	전	회원읍	명곡리	924	688	55,04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139, 마래빌 408동904호	김태성	
82	전	과원	회원읍	명곡리	910	2,079	115,384,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220,마래빌 506동1405호	유해양	
83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3	879	269,589,3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리 886	임소암	
84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3	932	291,716,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4동1302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김순임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85	대	대	회원읍 명곡리 909-4	482	482	150,866,000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09-4	박산화	2019.12. 의회의결	
86	전	전	회원읍 명곡리 899-2	1,204	1,204	176,988,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8길 7-14(진천동)	진효숙		
87	답	답	회원읍 명곡리 919	635	635	50,800,0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78	전아씨 다포공화 중증		
88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7	1,884	1,884	104,562,000				기획재정부	국유지		
89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	1,364	1,364	75,702,000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90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8-1	61	61	3,385,500		2020. 6			"		"
91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29	1,481	1,481	82,195,500					"		"
92	유지	유지	회원읍 명곡리 930	11,696	11,696	649,128,000					"		"
9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	802	802	83,007,000					"		"
9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3	94	94	9,729,000					"		"
95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8	26	26	2,691,000				"	"		
96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19	26	26	2,691,000				"	"		
97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0	36	36	3,726,000				"	"		
98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21	7	7	724,5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99	구거	구거	회원읍	명곡리	973	1,330	73,815,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2019.12. 의회결
100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1143-1	1,081	111,883,500			"	"	
101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1-7	404	41,814,000			기획재정부	"	
102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	16,210.1	972,606,000			국토교통부	"	
103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2-2	13	1,345,500			한국농어촌공사	"	
104	구거	구거	회원읍	설화리	570-2	112	11,592,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	"	
105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21,835	8,380,273,000			경찰청	"	
106 (건물)	대	대	회원읍	성산리	412-1	3,926	1,506,787,286			"	"	
107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95	515,070,000			"	"	
108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719-19	242.54	423,474,840			"	"	
109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202	12,120,000			"	"	
110 (건물)	천	천	회원읍	명곡리	939-11	125.85	7,551,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11 (건물)	잡	대	유가읍	용리 31-2	13,445	5,000	19,874,000,000 (사업비)	2022. 5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112 (건물)	대	대	현풍읍	중리 506	10,737	11,680	29,500,000,000 (사업비)	2022. 6	달성군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	"	"	
113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3	172	172	10,904,800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14	대	대	화원읍	성산리 257	258	258	58,462,800			"	전성배	
115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1	76	76	1,216,0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6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58	979	979	67,551,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1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42	155	155	2,619,5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18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59	258	258	4,850,4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19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4	245	245	16,905,000			"	전성배	
12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260	198	198	3,801,600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1	묘	묘	화원읍	성산리 265	598	598	41,262,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제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22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1	169	169	3,075,8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2019.12. 의회의결
123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3	1,045	1,045	19,019,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3길 8-8		전성배	
124	임	임	회원읍	성산리	산46	1,983	1,983	38,073,6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 245		전병득	
125	임	임	회원읍	성산리	262	684	684	12,448,800			"		전병득	
126	대	대	회원읍	성산리	272	1,421	1,421	388,927,700			달성군 회원읍 성산리271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대구 북구 산격동 981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85 대구 북구 서변동 694 대구 북구 서변동 1101 대구 북구 동변동 263 대구 수성구 봉무동 18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9 대구 수성구 만촌동 204 다사읍 문산리 269 가창면 대일리 387 가창면 우록리 549 가창면 상원리 278 다사읍 세천리 959 대구 달서구 이곡동 419 대구 북구 공산동 1007	배진호 박노균 서희규 우하충 구성서 이해춘 구경희 최진환 전병곤 하동규 윤안 서병찬 김상익 김두한 구경희 허노학 유효봉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대구 남구 남산동 362 대구 중구 대신동 512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40 대구 남구 남산동 407 대구 북구 서변동 885 대구 북구 서변동 857 다사읍 세천리 105 다사읍 영양리 624	윤창한 신춘길 우하갑 서대교 이봉래 이민희 구인회 정영원	
127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47	5,157		5,157	94,373,1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증	2019.12. 의회의결
128	전	전	화원읍 성산리 279	701		701	18,226,000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290	전의이 씨공구 당공파 중증	
129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4	198		198	3,564,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0	임	임	화원읍 성산리 산50-3	99		99	1,782,000			중구 산격동 1040	김용민	
131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34	506		506	35,420,000			달성군 화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2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9-2	198		198	4,197,6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박종석 박영호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용희 박재용	
133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5	1,210	53,040,000			달성군 회원읍 구라1길 77-24		백경자	
134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30	1,021	71,470,000	2020. 6	회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91 동서장관연립주택 108-109		임영목	2019.12. 의회의결
135	전	전	회원읍	구라리	829-1	403	22,285,900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136	임	임	회원읍	구라리	산99-1	7,772	170,764,000			대구 동구 신암동 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81-28 송원맨션 3동 12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8 송원맨션 1동 9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704동 1306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박중석 박영호 김용희 박재용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37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2	992	24,601,600	2020. 6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화원읍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6동 303호	서풍교	2019.12. 의회의결
138	전	전	화원읍	구라리	829	85	4,700,500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6-8	서숙이	
139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8-1	198	4,910,400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2길 26	이무현	
140	임	임	화원읍	구라리	산96	3,373	70,158,400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대구 중구 서야동 29	백남길 백남옥 백남희	
141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328	278,373,600	2020. 2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버커뮤니티 공간신축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73	한경애	2020.2. 의회의결
142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83.88	218,000,0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143 (건물)	대	대	화원읍	천내리	851	328	1,840,000,000 (사업비)	2021. 10				

2020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성 명		
1	임	임	옥포읍	기서터	산30-13	4,186	7,241,78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2	임	임	옥포읍	기서터	산30-14	598	1,076,400			"		"
3	임	임	옥포읍	기서터	산31-1	8,628	15,357,840			"		"
4	임	임	옥포읍	기서터	산31-2	496	882,880			"		"
5	임	임	옥포읍	기서터	산31-3	793	1,467,050			"		"
6	전	전	옥포읍	기서터	1-1	529	54,063,800			"		"
7	전	전	옥포읍	기서터	1-3	954	86,337,000			"		"
8	답	답	옥포읍	기서터	2-1	1,183	120,902,600			"		"
9	전	전	옥포읍	기서터	3	1,831	165,705,500			"		"
10	전	전	옥포읍	기서터	4-1	1,402	177,633,400			"		"
11	전	전	옥포읍	기서터	5	1,302	117,831,000			"		"
12	전	전	옥포읍	기서터	6	608	55,024,000			"		"
13	전	전	옥포읍	기서터	7	1,220	110,410,0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4	전	전	우포읍	기세리	8	889	80,454,5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15	전	전	우포읍	기세리	9-1	569	75,904,600			"	"	
16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1-1	506	67,500,400			"	"	
17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2	565	51,132,500			"	"	
18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3	1,177	93,218,400			"	"	
19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4	621	49,183,200			"	"	
20	전	전	우포읍	기세리	15	377	29,858,400			"	"	
21	임	임	회원읍	살화리	산124-1	3,471	20,583,030			"	"	
22	임	임	회원읍	살화리	124-7	496	3,035,520			"	"	
23	임	임	회원읍	살화리	124-9	298	777,780			"	"	
24	임	임	회원읍	살화리	124-10	1,289	3,364,290			"	"	
25	임	임	회원읍	살화리	124-15	384	810,240			"	"	
26	임	임	회원읍	살화리	산124-17	20,383	41,173,660			"	"	
27	임	임	회원읍	살화리	산124-18	61	128,710			"	"	
28	임	임	회원읍	살화리	산143	6,347	79,337,5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9	임	임	회원읍	산144	산144	2,380	11,781,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30	임	임	회원읍	산145-1	산145-1	8,132	16,670,600			"	"	
31	임	임	회원읍	산145-3	산145-3	397	837,670			"	"	
32	임	임	회원읍	산145-4	산145-4	793	1,704,950			"	"	
33	임	임	회원읍	산145-5	산145-5	3,224	6,931,600			"	"	
34	임	임	회원읍	산146	산146	595	3,712,800			"	"	
35	임	임	회원읍	산147	산147	1,983	4,263,450			"	"	
36	임	임	회원읍	산148-1	산148-1	1,686	10,318,320			"	"	
37	임	임	회원읍	산148-2	산148-2	1,983	25,382,400			"	"	
38	임	임	회원읍	산148-2	산148-2	298	3,814,400			"	"	
39	전	전	회원읍	838-4	838-4	161	28,336,000			"	"	
40	전	전	회원읍	839	839	1,655	202,737,500			"	"	
41	전	전	회원읍	840-1	840-1	255	21,471,000			"	"	
42	전	전	회원읍	840-2	840-2	836	55,176,000			"	"	
43	전	전	회원읍	840-3	840-3	476	40,079,200			"	"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44	전	전	회원읍	840-5	922	922	78,370,000	2020. 3	대구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2019.12. 의회의결
45	주차장	주차장	회원읍	840-8	240	240	64,896,000			"	"	
46	전	전	회원읍	842	1,091	1,091	12,328,300			"	"	
47	전	전	회원읍	843	774	774	8,746,200			"	"	
48	임	임	회원읍	844	760	760	8,588,000			"	"	
49	전	전	회원읍	844-1	2,106	2,106	46,121,400			"	"	
50	대	대	회원읍	838-2	593	593	289,146,800			"	"	
51	대	대	회원읍	840	329	329	127,684,900			"	"	
52	대	대	회원읍	840-6	96	96	25,958,400			"	"	
53	구	구	옥포읍	1-4	11	11	995,500			"	"	
54	구	구	옥포읍	1-5	41	41	3,710,500			"	"	
55	구	구	옥포읍	4-2	116	113	10,226,500			"	"	
56	구	구	옥포읍	9-2	572	551	49,865,500			"	"	
57	구	구	회원읍	840-9	95	95	9,500,000			"	"	
58	구	구	회원읍	841-5	137	137	13,700,000			"	"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취득 소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주 소	성 명	
총 계			97필지		218,853.2	59,363,290,370			62 (LH, 교회, 국, 법인, 개인 58)		
1	주거장	주거장	회원읍	설화리	563	38,882.3	50,663,636,900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업 취소
2	주거장	주거장		명곡리	324	33.5	36,347,500		"	"	
3	주거장	주거장		명곡리	324-1	45.9	49,801,500		"	"	
4	구거	구거		설화리	569	692.2	71,642,700		"	"	
5	임야	임야		명곡리	931	18,105	128,726,55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401-3	회원 교회	
6	임야	임야	회원읍	명곡리	931-1	7,980	48,438,600		"	"	사업 취소
7	임야	임야		명곡리	909-1	19,834	123,764,160		"	"	
8	답	답		설화리	578-9	83	8,067,600		기획재정부	국유지	
9	답	답		설화리	571-8	23	2,235,600		"	"	
10	답	답		설화리	571-9	99	9,622,800		"	"	
11	답	답		설화리	571-3	202	19,634,400		"	"	
12	잡종지	잡종지		명곡리	322-1	34.2	27,264,240		대구시 중구 명덕로 85(남산동)	대창에너지 주식회사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3	임야	임야	명곡리	931-4	21,397	21,397	152,132,670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대구시 수성구 지범로22길 10, 101동 107호(지산동·보상펜션)	최혁 외 2	사업 취소			
14	임야	임야	명곡리	909-7	3,306	3,306	22,679,160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97-2 신신별과 비동 301호	김영숙 외 4	
15	임야	임야	명곡리	909-6	417	417	2,710,50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693	석권도	
16	임야	임야	명곡리	909-5	8,007	8,007	48,602,490					대구시 서구 내당동318 삼익뉴타운 103동 811호	강다원	
17	답	답	명곡리	918	1,197	1,197	95,76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43, 501동1601호(미래별5단지)	구봉일	
18	답	답	명곡리	917	995	995	55,222,500					"	"	
19	전	전	명곡리	901	483	483	26,806,500					대구시 서구 원대동3가 1446-1	김병명	
20	전	전	명곡리	909-8	2,086	2,086	115,773,000					"	"	
21	답	답	명곡리	908	879	879	48,784,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866	김용득	
22	답	답	명곡리	906-1	1,395	1,395	77,422,500					"	"	
23	전	전	명곡리	905	330	330	45,738,000					"	"	
24	답	답	명곡리	906-2	1,069	1,069	148,163,400					"	"	
25	묘지	묘지	명곡리	904	884	884	33,768,800					"	"	"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상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6	답	답	명곡리 907-1	1,537	1,537	85,303,500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2020. 6	사업 취소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02-2	김정용	
27	답	답	명곡리 907-2	1,154	1,154	64,047,000			"	"	
28	답	답	설화리 578-6	502	502	48,794,4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2 창구탕맨션 101동1102호	김진식	
29	답	답	설화리 575	324	324	31,492,800			"	"	
30	답	답	설화리 578-12	281	281	27,313,200			"	"	
31	답	전	설화리 571-11	433	433	44,599,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0-2	박성곤	
32	답	전	설화리 571-17	23	23	2,369,000			"	"	
33	전	전	명곡리 911-1	423	423	23,476,500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34	전	전	명곡리 912	1,388	1,388	77,034,000			"	"	
35	대	대	명곡리 911-2	433	433	115,178,000			"	"	
36	답	전	명곡리 916	952	952	52,836,000			"	"	
37	목장 용지	목장 용지	명곡리 911-3	810	810	104,733,000			"	"	
38	답	전	명곡리 913	1,334	1,334	118,459,200			"	"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9	답	전	회원읍	명곡리	915	1,297	115,173,6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564-1	박정수	사업 취소
40	전	전		명곡리	900	374	54,978,000			경북 영주시 중앙로 95번길13(영주동)	윤성훈	
41	전	전		명곡리	899	1,104	162,288,000			"	"	
42	답	답		설화리	579-2	1,425	162,022,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753	임재암	
43	답	답		설화리	579-5	1,150	111,780,000			"	"	
44	답	답		명곡리	925	840	46,620,000			대구시 남구 대명북개로3길71(대명동)	최명섭	
45	답	답		명곡리	923	664	53,120,000			"	"	
46	전	전		명곡리	926-1	1,323	73,426,5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천로 57, 10동1303호(대곡역2면빌)	최영욱	
47	답	전		명곡리	926-3	631	35,020,500			"	"	
48	전	전		설화리	579-1	436	42,379,200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45, 411동802호(도원동,대곡강변원)	황정숙	
49	전	전		설화리	579-3	1,021	116,087,700			"	"	
50	답	답		명곡리	920	575	46,00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51	답	답		명곡리	922	1,296	103,680,0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로16길 43	김인진 외 4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2	답	답	설화리	578-4	632	61,430,4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화리 971	정유순 외 2	사업 취소
53	전	전	명곡리	909-2	3,306	47,606,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128-3	박만호 외 1	
54	답	답	설화리	578-1	731	71,053,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714	박춘향	
55	답	답	설화리	572-1	1,564	152,020,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곡 리 139, 대밭410동1402호	김진태	
56	답	답	설화리	578-7	2,522	261,027,000			대구시 남구 대명로20길 82(대명동)	김석곤	
57	답	답	설화리	578-2	1,051	102,15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모 개골길14	임상호	
58	답	전	설화리	579-4	1,293	147,014,1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708	박제덕	
59	답	답	설화리	578-8	949	92,242,800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 로 162	김준영	
60	답	답	설화리	578-3	1,600	155,520,00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10-19	김충겸	
61	답	답	설화리	578-10	1,322	128,498,4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설 화리 966	석정호	
62	답	답	설화리	573	774	75,232,8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명 곡리 193	김정수	
63	답	답	설화리	574	783	76,107,600			대구시 동구 신천동 360 코오롱아파트 4동 203호	임진택	
64	답	답	설화리	576	1,501	145,897,200			대구시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 504 길13-17, 10, 501호명곡대밭마을	정쌍복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65	답	설화리	571-10	258	258	25,077,600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2020. 6	대구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 슬로500길 12-8	김미승	사업 취소	
66	답	설화리	578-11	899	899	87,382,800			대구시 달서구 장기로 189, 108동1003호(본리동,상당매안)	주춘숙		
67	전	설화리	571-12	909	909	88,354,8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3길 85-18(진천동)	박영명		
68	답	설화리	577	820	820	79,704,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545-3	임영수		
69	답	설화리	571-13	208	208	20,217,6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 화리 683	임환수		
70	답	설화리	570-1	46	46	4,471,2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 곡리 216	박동방우		
71	전	명곡리	902	727	727	40,348,500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길 7, 509동109호(평향내)	김창현		
72	답	명곡리	921	1,537	1,537	85,303,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 슬로 2493	신유창		
73	전	명곡리	926-2	1,706	1,706	94,683,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 천로 304	진공희		
74	전	명곡리	924	688	688	55,040,0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 리 139, 미래빌 408동904호	김태성		
75	전	명곡리	910	2,079	2,079	115,384,5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 리220,미래빌 506동1405호	유혜양				
76	대	명곡리	903	879	879	269,589,30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 곡리 886	임소암				
77	대	명곡리	909-3	932	932	291,716,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3 14동1302호(마산동, 뉴타운아파트)	김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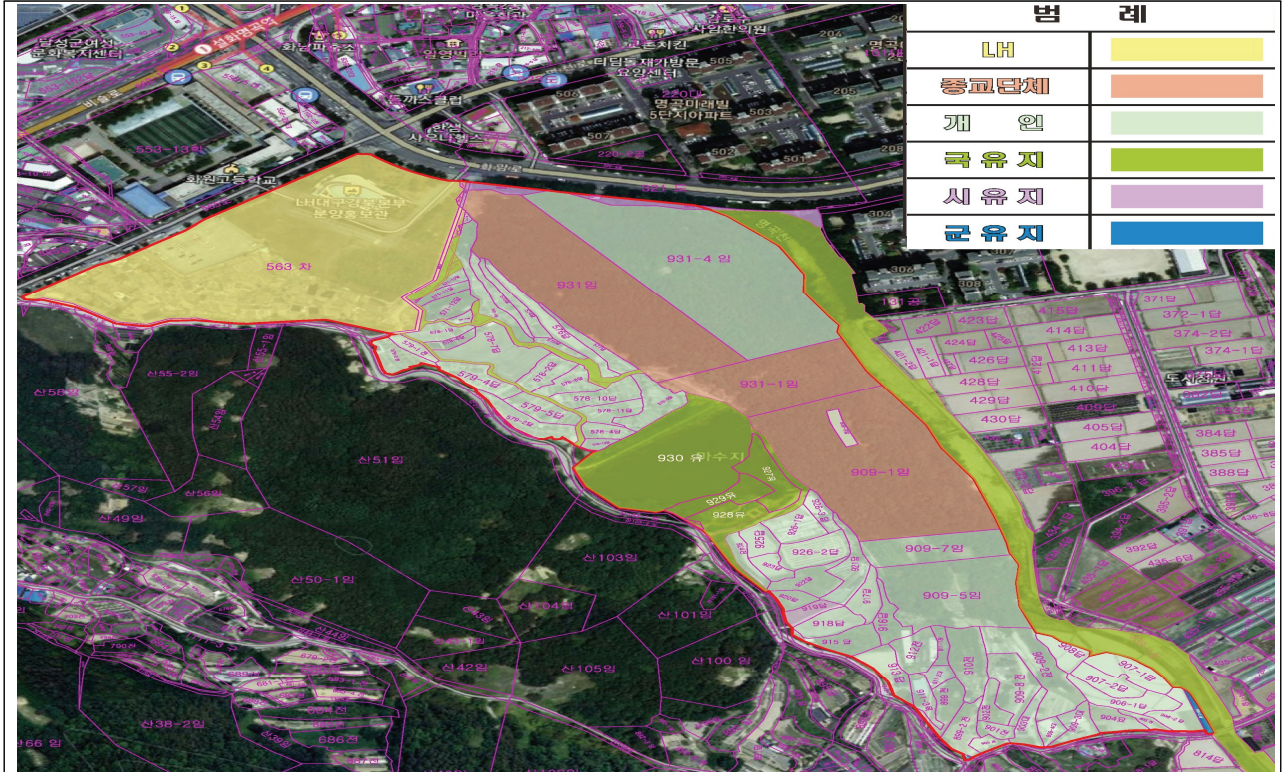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78	대	대	화원읍	명곡리 909-4	482	482	150,866,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909-4	박산화	사업 취소
79	전	전		명곡리 899-2	1,204	1,204	176,988,000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8길 7-14(진천동)	진효숙	
80	답	답		명곡리 919	635	635	50,800,000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78	전의씨 다포공과 중증	
81	유지	유지		명곡리 927	1,884	1,884	104,562,000			기획재정부	국유지	
82	유지	유지		명곡리 928	1,364	1,364	75,702,000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83	유지	유지		명곡리 928-1	61	61	3,385,500			"	"	
84	유지	유지		명곡리 929	1,481	1,481	82,195,500			"	"	
85	유지	유지		명곡리 930	11,696	11,696	649,128,000			"	"	
86	구거	구거		설화리 1143	802	802	83,007,000			"	"	
87	구거	구거		설화리 572-3	94	94	9,729,000			"	"	
88	구거	구거		설화리 571-18	26	26	2,691,000			"	"	
89	구거	구거		설화리 571-19	26	26	2,691,000			"	"	
90	구거	구거		설화리 571-20	36	36	3,726,000			"	"	
91	구거	구거		설화리 571-21	7	7	724,500			"	"	

구분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취소 대상수량 (㎡)	대장가액(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취소사유	취득 취소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92	구거	구거	화원읍	명곡리	973	1,330	73,815,000	2020. 6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매입 계획 취소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사업 취소
93	구거	구거		설화리	1143-1	1,081	111,883,500			"	"	
94	구거	구거		설화리	571-7	404	41,814,000			기획재정부	"	
95	하천	하천		명곡리	939-1	16,210.1	972,606,000			국토교통부	"	
96	구거	구거		설화리	572-2	13	1,345,500			한국농어촌공사	"	
97	구거	구거	설화리	570-2	112	11,592,000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일원



Ⅱ. 검토의견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계획 취소

- 당초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건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2019. 12. 24.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일원 외의 지역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19년 승인된 당초 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1일

2. 제 출 자 : 구자학 의원 등 10인

3. 제안사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 11조)
- (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2조)
- (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13조)
-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14조)
-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5조)
- (6)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20조)
-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3조)
- (8)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4조)
- (9)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30조)

나.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48조)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27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내용을 기준에 맞게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1조 ~ 제1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장 등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제출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제15조, 직무관련 조언·자문 ·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30조, 알선청탁, 사적 노무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과,
- 안 제27조, 제48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 · 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영리 목적 거래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7조제5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
3.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제4호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계약 체결
6. 제9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3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집행기관 및 군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군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군 또는 군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제2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외부강의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32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 제3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

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5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8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0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5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절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번	1	검 직 내 용 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검 직(변경)신 고 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인) 달성군의회회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 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인)

달성군의회의회장 귀하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인) 달성군의회의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일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25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11호 서식] (제27조제4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제5항, 제34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33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34조제5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 서식] (제34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 서식] (제34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3월 25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1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11조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제18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아동의 평등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협조요청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참여와 정책반영) ①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종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구달성경찰서 소관 부서장
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장
4. 아동 업무와 관련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6.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부모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군정참여에서의 양성평등)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남녀 공무원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3월 25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3. 제안사유

-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설치, 홍보 및 지원(안 제3조 ~ 제6조)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4조 설치 기관시설,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6조 군민들에 대한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군민”이란 달성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달성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그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이나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실적 제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화재예방방법의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전문개정 2010. 6.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3월 25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3. 제안사유

-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군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각종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5.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각종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성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으로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 지원) 군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및 회계 등에 관한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7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달성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육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 사회적 경제부문 포상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5.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12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달성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육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1조의2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방법,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
- 안 제11조의 3 사회적 경제 부문 포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3(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달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 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9조 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신 설>	<u>정하는 사항</u> ② <u>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u> <u>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u> <u>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u> <u>운영할 수 있다.</u> ③ <u>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u> <u>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u> <u>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u> <u>부를 지원 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u> <u>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u> <u>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u> <u>따른다.</u> <u>제11조의3(포상) ① 군수는 사회적경</u> <u>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u> <u>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u> <u>을 포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u> <u>「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u> <u>에 따른다.</u>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해촉,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과 협약의 해지, 보조금 등의 반환 사유를 상위법령과 동일규정으로 개정하여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1)
- 보육정책위원회 해촉(안 제6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안 제16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협약의 해지(안 제19조 제1항)
- 보조금 등의 반환(안 제35조)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의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별표8의 2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해촉,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과 협약의 해지, 보조금 등의 반환 사유를 상위법령과 동일규정으로 개정하여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의2 및 3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의1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안 제35조 보조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3)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0이하”를
“100분의 45이상”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중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제3항 중 “제4호까지에 따라서” 를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u>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1. ----- ----- 45이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해촉) (생 략)	제6조(해촉) (현행과 같음)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u>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삭 제)</u>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u>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삭 제)</u>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 <u>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삭 제)</u>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18조에 따른 지휘·감동의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삭 제)

5.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삭 제)

6 ~ 10 <신 설>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5년
으로 하고,-----

제19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른 보육기회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7.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8.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9.「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영유아보육법」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제35조 (보조금 등의 반환)	제35조 (보조금 등의 반환)
(생 략)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한 때(삭 제)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내용)
 법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운영·관리(안 제1조 ~ 안제3조)
- 문화강좌 운영, 사무의 위임 사항(안 제4조 ~ 안제5조)
- 사용료 등 시설사용, 주민의 이용 사항(안 제6조 ~13조)

5.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 제5조 북카페의 수행 기능과 운영방향,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3조 사용료 등 시설 사용,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북카페 두런두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대상의 명칭은 북카페 두런두런(이하 “북카페”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하리 42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북카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전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2. 북카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북카페 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무

제4조(문화강좌 운영)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복지 증진,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카페에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북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 사무 및 제4조에 따른 문화강좌 등의 운영사무를 현풍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북카페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위가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읍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읍장은 북카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④ 사용료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양도 등 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읍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북카페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북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3조(이용신청) 북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제2항 관련)

1)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문화강좌	주1회 1개월	50,000원	1회는 2시간 이내
기타	· 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규칙으로 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2) 시설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회의실 또는 강의실	1일	10,000원	1일은 북카페 1일 운영시간 동안을 말함
기타	· 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 회의실과 강의실은 별도임		

[별표 2]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사용·수강을 할 수 없거나 사용·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	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사용·수강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총 사용·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 또는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 사용·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사용·수강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사용·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총 사용·수강시간은 사용·수강기간 중의 총 사용·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사용·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용 및 수강 신청서

성명		성별	남 / 여	주소 (학교)		
생년월일		직업 (학년)			연락처	
신청강좌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카페 두런두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및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이용 및 수강 접수증

성명		주소 (학교)			이용 및 수강내용
생년월일		직업 (학년)		성별 남 / 여	
귀하가 신청하신 이용 및 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					

※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20년 ~ 계속추진

나. 주요내용 : 북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역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북카페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시설 건물 운영과 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비용

3. 관련조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북카페 운영 및 주민참여·체험 프로그램 관리 비용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184백만원 정도**

○ 인건비 : 33,784,000원

- 무기계약직(북카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1인 : 33,784,000원

○ 사무관리비 : 146,288,000원

- 운 영 비 : 174,000원 × 12월 = 2,088,000원
- 강 사 료 : 300,000원 × 3회 × 150일 = 135,000,000원
- 사무관리비 : 300,000원 × 12월 × 90% = 3,240,000원
- 홍보물 제작 : 5,000,000원 × 1회 = 5,000,000원
- 정수기 임차료 : 40,000원 × 2개소 × 12월 = 960,000원

○ 공공운영비 : 4,200,000원

- 공공요금 :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 시설장비유지비 = 3,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84,272	184,272	184,272	184,272	184,272	921,360
북카페 두런두런 활성화		184,272	184,272	184,272	184,272	184,272	921,360
재원 조달		184,272	184,272	184,272	184,272	184,272	921,3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184,272	184,272	184,272	184,272	184,272	921,36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지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6.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사용 용어(안 제1조 ~ 안제3조)
- 관리·운영, 업무 및 센터 기능(안 제4조 ~ 안제5조)
-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안 제6조 ~ 안12조)
- 센터의 이용 사항(안 제13조 ~ 안18조)
- 위탁운영·관리(안 제19조 ~ 안25조)

5.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사용 용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2조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제18조 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 ~ 제25조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 또는 수강료 등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산을 활용한 안보교육 및 홍보·전시·교육·체험·판매·휴게
4. 하빈 PMZ 평화기념마을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센터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군의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그 성비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따른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기본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의 결정을 포함한 센터 운영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용

제1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신청)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체험료의 징수)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위원회가 체험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체험료 등을 징수할 때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 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6조(체험료의 감면)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대구시 또는 달성군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④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체험료의 반환) 체험의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및 배상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장 위탁운영·관리

제1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센터의 목적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3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에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료(제15조제2항 관련)

1) 프로그램 체험료

구분	기준	체험료	비고
체험수업	1회당	상한액 30,000원	1회는 2시간 이내
기타	· 위 범위에서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체험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체험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별표 2]

체험료 등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체험을 할 수 없거나 사용·체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체험료 전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로 인해 체험 취소된 경우 또는 체험자가 본인의 의사로 체험을 포기한 경우	체험 시작 전	이미 납부한 체험료 전액
	총 체험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체험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비고 : 총 체험시간은 체험수업 중의 총 체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기까지 경과된 체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험 신청서

성명		성별	남 / 여	주소 (학교)		
생년월일		직업 (학년)			연락처	
신청강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체험 접수증

성명		주소 (학교)			이용 및 체험내용
생년월일		직업 (학년)		성별 남 / 여	
귀하가 신청하신 체험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 (인)					

※ 접수증은 전산에 의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1]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20년 ~ 계속추진

나. 주요내용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시설 건물 운영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드는 비용

3. 관련조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운영 및 주민참여·체험 프로그램 관리 비용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193백만원 정도(2020년 113백만원 정도, 7개월)**

○ 인건비 : 73,146,490원(센터장 1인, 팀원 2인)

- 기본급 : $1,795,310\text{원} \times 7\text{월} \times 3\text{인} = 37,701,510\text{원}$
※2020년 최저시급(8,590원)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근무기준 지급액
- 강의수당(총괄책임자) : $[(150,000\text{원} \times 1\text{h}) + (80,000\text{원} \times 1\text{h})] \times 56\text{회}$
= 12,880,000원
- 강의수당(책임강사) : $[(100,000\text{원} \times 1\text{h}) + (50,000\text{원} \times 1\text{h})] \times 56\text{회}$
= 8,400,000원
- 강의수당(직원강사) : $[(80,000\text{원} \times 1\text{h}) + (40,000\text{원} \times 1\text{h})] \times 56\text{회}$
= 6,720,000원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0년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주 2회, 회당 2시간),
총 56회 강의 기준

- 연차수당 : $68,720 \times 6\text{월} \times 3\text{인} = 1,236,960\text{원}$
- 4대보험부담금 : $3,204,020(\text{월평균임금}) \times 4\text{대보험요율} \times 7\text{월} \times 3\text{인}$
 $= 6,208,020\text{원}$

○ 사무관리비 : 6,650,000원

- 홍보물 제작 : $500,000\text{원} \times 7\text{월} = 3,500,000\text{원}$
- 기타 수용비 : $450,000\text{원} \times 12\text{월} = 3,150,000\text{원}$

○ 공공운영비 : 33,150,000원

- 전기요금 : $2,500,000\text{원} \times 7\text{월} = 17,500,000\text{원}$
- 수도요금 : $1,000,000\text{원} \times 7\text{월} = 7,000,000\text{원}$
- 전화 및 인터넷요금 : $100,000\text{원} \times 7\text{월} = 700,000\text{원}$
- 정수기 임차료 : $50,000\text{원} \times 1\text{대} \times 7\text{월} = 350,000\text{원}$
- 복합기 임차료 : $300,000\text{원} \times 1\text{대} \times 7\text{월} = 2,100,000\text{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 $200,000\text{원} \times 7\text{월} = 1,400,000\text{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2,000,000\text{원} \times 1\text{년} = 2,000,000\text{원}$
- 유지관리보수비 : $300,000\text{원} \times 7\text{월} = 2,100,000\text{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정다현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12,946	192,547	192,547	192,547	192,547	883,134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		112,946	192,547	192,547	192,547	192,547	883,134
재원 조달		112,946	192,547	192,547	192,547	192,547	883,13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비		112,946	192,547	192,547	192,547	192,547	883,134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지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6.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사무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4조 ~ 안5조)

5.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사무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 유지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에 대한 통합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동서원(이하 본조에서 “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서원의 국내·외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서원에 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서원의 유지·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을 원활히 수행 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을 수탁자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0. 2. 18.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의거 주민세 등을 감면하여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
-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국가 및 대구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감면 세목(2020년도에 한함)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이하 법인

- 법인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춘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다. 감면 추계액 : 6.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주 민 세				재 산 세	비고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사업자 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6.5	4.8	1.7	-	-	-	
코로나 19지원 의료기관	-	-	-	향후 코로나 19 지원 의료기관 지정 시 산정 가능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	-	-	-	건물주가 신청 시 세액계산을 통해 산정 가능	

※ 코로나 19 지원 의료기관 및 착한 임대료 관련 재산세 감면은 추계액에 미포함

라.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등

6. 관련공문

-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공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2.5.)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계획

II. 검토의견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군세 감면 동의요청 이유는

2020. 2. 18.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주민들의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계획에 의거 주민세 등을 감면하여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

○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동의안 1부.
- 2) 관계법령 1부.
- 3) 관련공문 1부. 끝.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4. 9.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2020. 2. 18.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주민세 등을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
-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국가 및 대구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감면 세목(2020년도에 한함)

- (1)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 (2)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이하 법인
 - 법인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면제한다.

(3)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한다.
-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 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4)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춘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3. 감면 추계액 : 6.5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계	주 민 세				재 산 세	비고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사업자 균등분	종업원분	재산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	6.5	4.8	1.7	-	-	-	
코로나19지원 의료기관	-	-	-	향후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지정 시 산정 가능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	-	-	-	건물주가 신청 시 세액계산을 통해 산정 가능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및 착한 임대료 관련 재산세 감면은 추계액에 미포함

4. 기타사항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3)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련공문

- (1) 지방세 지원계획 통보 공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2.5.)
- (2)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1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 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정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壊)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법인의 표준세율 중 감면 대상자 범위 요약표

자본금액 종업원	10억원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 이하	5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8., 2019. 12. 31.>

1. 담배소매인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2 행정안전부 공문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종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4월 9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전문적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민간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계획 개요

- 위 치 :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37-15
- 운영예산 : 113백만원(인건비 73, 운영비 40)
- 운영방식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단체에 업무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20. 6. ~ 2022. 5.(2년간)
- 수탁기관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조직구성 : 3인(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 ※ 수탁기관에서 인력구성(다양한 체험 강의를 원활한 자)

○ 주요업무

-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체험 발굴, 연구)
-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활성화 지원(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운영관련 지원, 마을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 센터 운영사무(회계·사업지원 등) 및 시설 관리

나. 추진 경위

- 2019. 8.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개관
- 2019. 8. ~ 2020. 3. : 기간제 근로자 3인 고용 직접운영
- 2020. 3.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계획 수립

다. 향후 일정

- 2020. 4.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접수
- 2020. 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0. 6. : 협약체결 및 위탁운영 시행

5. 관계법령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검토의견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민간위탁 동의요청 이유는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함.

○ 위와 같이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동의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0. 4.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독창적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근거법령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 위탁운영 계획

- 가. 위 치 :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37-15
- 나. 운영예산 : 113백만 원(인건비 73, 운영비 40)
- 다. 운영방식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 단체에 업무 위탁 운영
 - ※ 2019. 8. ~ 2020. 3. 기간제근로자 3인 고용 직접운영
- 라. 위탁기간 : 2020. 6. ~ 2022. 5.(2년간)
- 마. 수탁기관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바. 조직구성 : 3인(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 ※ 수탁기관에서 인력구성(다양한 체험 강의를 원활한 자)
- 사. 주요업무

-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체험 발굴, 연구)
-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마을활성화 지원(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창업 운영관련 지원, 마을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 센터 운영사무(회계·사업지원 등) 및 시설 관리

4. 추진 경위

- 가. 2019. 8.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개관
- 나. 2019. 8. ~ 2020. 3. : 기간제 근로자 3인 고용 직접운영
- 다. 2020. 3. :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관리 계획 수립

5. 향후일정

- 가. 2020. 4.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접수
- 나. 2020. 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다. 2020. 6. : 협약체결 및 위탁운영 시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회동의)

-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